

교습비등 반환기준(제18조제3항 관련)

구분			반환사유 발생일	반환금액	
1. 제18조제2항제1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			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	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- (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×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)	
2. 제18조제2항제1호의2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			학원설립·운영자,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	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- (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×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)	
3. 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	가.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	1) 독서실 을 제외 한 학원, 교습소 및 개인과외 교습자 의 경우	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날	교습 시작 전	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
				교습 시작 후 부터 총 교습 시간의 1/3 경과 전까지	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
				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후부터 1/2 경과 전까지	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
				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	없음
		2) 독서실 의 경우	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	학습장소 사용 전	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

					된 1일 교습비 등 × 학습장소 사용 시작일부 터 학습장소 사 용을 포기한 날 의 전날까지의 일수)
	나.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 간이 1개월을 초 과하는 경우	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 는 학습장소 사 용을 포기한 날	교습 시작 전 또는 학습장소 사용 전	이미 납부한 교 습비등의 전액	
			교습 시작 후 또는 학습장소 사용 후	반환사유가 발 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 비등(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 월 이내인 경우 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)에 나머 지 월의 교습비 등의 전액을 합 산한 금액	

비고

1.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  
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2.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(인터넷으로 수강  
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)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  
다.

### 교습비등 게시표

년 월 일 현재

[단위:원]

교습 과정	총교습시간 (분/월)	교습비	정수단위 (월, 분 기)	기타경비						합계
				모의고사비	재료비	피복비	급식비	기숙사비	차량비	
초등 a	990분	202원	200000							
초등 b	1742분	202원	360000							
중등	1782분	210원	360000							
고등	1646분	243원	400000							

「경기도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 제8조의2에 따라 교습비등을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.

2025년 1월 1 일

설립·운영자(교습소 교습자, 개인과외교습자)

손정아 (서명 또는 인)

#### 유의사항

1. 교습비등 게시표는 관할 교육지원청에 등록 신청한 최종자료를 게시합니다.
2. 글씨는 학습자의 확인이 쉬운 크기로 합니다.
3. 게시는 학원 및 교습소, 개인과외교습장소(교습자의 주거지에 한함)의 내부와 외부에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합니다.

<별지>

## 교 습 비 등 (변경)등 록 내 용

학원(교습소)명			
설립·운영자		전 화 번 호	

### 교 습 비

교습과정	교습과목(반)	교습대상	교습기간	총 교습시간 (하루 수업 시간 x 주당 수업 횟수 x 4.2주 = 총 교습시간)	정원 (반별)	교습비
			개월	분 x 주 회 x 주 =	명	원
			개월	분 x 주 회 x 주 =	명	원
			개월	분 x 주 회 x 주 =	명	원
			개월	분 x 주 회 x 주 =	명	원
			개월	분 x 주 회 x 주 =	명	원
			개월	분 x 주 회 x 주 =	명	원
			개월	분 x 주 회 x 주 =	명	원
			개월	분 x 주 회 x 주 =	명	원
			개월	분 x 주 회 x 주 =	명	원

※ 할인내역 :

### 기 타 경 비

교습과목(반)	모의고사비	재료비	피복비	급식비	기숙사비	차량비	계

※ 작성 시 유의사항 :

- ① 기타경비는 세금계산서, 거래명세서, 원가계산서 등 실비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.
- ② 교습 대상에는 유아 / 초등 / 중등 / 고등 / 유치 / 유치중 / 초중 / 중고 / 성인 / 기타 중 선택하여 작성

20    년    월    일

학원설립·운영자

(서명 또는 인)

### 교습비등 영수증 원부

일련번호:		연월(분기):			
납부자	등록(신고)번호:	성명:			
	생년월일:	교습과목:			
납부 명세	교습비	기타경비			
위와 같이 영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. ※ 본 서식 외 교육감이 지정한 영수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<div style="text-align: right;">                     년    월    일                 </div> 학원설립·운영자,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 (서명 또는 인)					

### 교습비등 영수증

일련번호:		연월(분기):			
납부자	등록(신고)번호:	성명:			
	생년월일:	교습과목:			
납부 명세	교습비	기타경비			
위와 같이 영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. ※ 본 서식 외 교육감이 지정한 영수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<div style="text-align: right;">                     년    월    일                 </div> 학원설립·운영자,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 (서명 또는 인)					